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9. 3.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7월 13일

나. 발 의 자: 차인영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8. 3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차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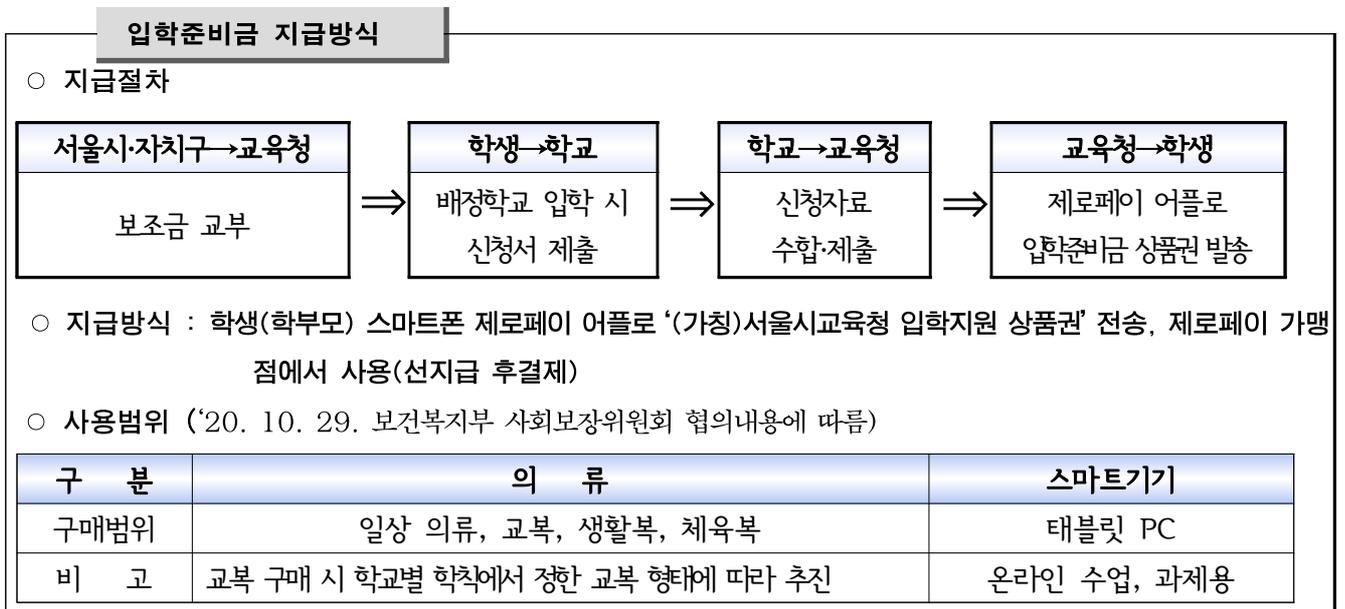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규정(안 제3조 ~ 제4조)

-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 본 조례안은

-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격차의 최소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위 입학준비금이란, 지원대상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교복 등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금년부터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간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공동 추진에 따라 우리 구는 2021년도 예산편성 시 270,120천원을 책정하여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1인당 30만원, 재원부담은 서울시교육청 50% : 서울시 30% : 자치구 20%로 계획되어 있고, 그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정의)에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이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가 해당되며, “입학준비금”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
- 안 제3조(지원대상)에서 기준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1호에서 영등포구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그 지원 대상으로 특정하였으며, 제2호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우리 구 관내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4조(지원금액)에서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지원 금액은 차후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간의 지원대상, 지원물품 또는 분담 비율 등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구의 독자적인 지원책에 따라서는 그 지원 금액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청장이 매년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지원절차)는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접수 방법, 적격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환수)는 입학준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복 지급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의 환수 규정이고,
- 안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는 상위 조항의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현재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시 교육청과 각 자치구간 협의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임.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의 입학준비금 제도는 주민들의 가계소득 격차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중·고등학교 입학 대상자에게 보편적 교육복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위배사항이나 자구 등에도 문제는 없음.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64 호
----------	---------

발의년월일: 2021년 8월 일

발 의 자: 차인영 의원 외 7명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규정(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 라.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3. 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반영
- 다. 입법예고(2021. 7. 16. ~ 7. 20.) :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중·고등학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